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789호 2023. 10. 16.(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검단17호근린공원)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1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4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4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38호 석남동 529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6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41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4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실 [032-560-4144]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17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검단17호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4)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3.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69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가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검단 17호	근린 공원	서구 왕길동 산169번지 일원	50,127	감) 771	49,356	인고 제1998-118호 (1998.6.12)	-

○ 변경 사유서

공원명	시설의 세 분	변경 내 용	변경 사 유
검단 17호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A=50,127㎡ → 49,356㎡ [감 771㎡]	· 중복결정된 일부 도로지역 및 건축물 존치 지역 제척(면적 감소: 771㎡)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1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31 (백석동)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10.1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10-1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86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31 (백석동)	20220221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2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87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35 (백석동)	20220221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0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1로 30 (가정동)	20230724	행복주택단지의 남쪽에서 첫 번째 만나는 도로에서 착안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0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2로 40 (가정동)	20230724	행복주택단지의 남쪽에서 두 번째 만나는 도로에서 착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774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25-25 (석남동)	20090922	서구 4대 재래시장의 하나인 거북시장 및 거북골을 관통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44-1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53 (마전동)	20090710	검대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98-7	인천광역시 서구 첨단기술로 48 (청라동)	20191223	IFP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착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3-10-16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73-1 (가정동)	인천가정2공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65 (가정동)	인천가정2공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63 (가정동)	인천가정2공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63-2 (가정동)	인천가정2공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대로 420 (심곡동)	인천가정2공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110211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 성장을 염원	
6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대로 416 (심곡동)	인천가정2공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110211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 성장을 염원	
7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93 (가정동)	인천가정2공공주택지구 내 중전 건물 폐지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200 (원당동)	소유자 지번 착오	20200420	서로 발전하는 도시'에서 착안. 신도시의 남북을 잇는 세번째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3-211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공 고 기 간 : 2023. 10. 16. ~ 2023. 10. 30.(15일간)
-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15누2890 등 5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2,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

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2)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315저6060	카니발 하이리무진	변**	2023.09.04.
2	52주0899	S350 d 4Matic L	김**	2023.09.15.
3	61노7576	G90	하**	2023.09.18.
4	10주8519	쏘렌토	하**	2023.09.18.
5	15누2890	E300	케**	2023.09.2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3 - 2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계약 시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계약 시 수탁기관의 의무
 - 시설, 장비, 비용 등은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
 - 수탁사무 처리 시 유의 사항
- 위탁사무 감사
 -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외 인사조치 병행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43,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계약 시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계약 시 수탁기관의 의무
 - 시설, 장비, 비용 등은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
 - 수탁사무 처리 시 유의 사항
- 위탁사무 감사
 -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외 인사조치 병행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해당 없음
- 나. 예산 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관계”를 “5급 상당 이상의 관계”로 한다.

제1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수탁기관의 의무

가. 조례 및 민간위탁계약서 준수 및 구청장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나.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

다. 위탁받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담 징수행위 금지

라. 위탁받은 시설의 중·개축 또는 추가 신축의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

마. 위탁받은 사무의 재위탁 금지.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해야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위탁사무를 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제14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
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
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
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

-----.

1. ~ 5. (현행과 같음)

6.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계약체결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수탁기관의 의무

가. 조례 및 민간위탁계약서 준
수 및 구청장의 처분 등 지시
사항 이행

나.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
은 목적으로만 사용

다. 위탁받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담
징수행위 금지

라. 위탁받은 시설의 중·개축 또
는 추가 신축의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

마. 위탁받은 사무의 재위탁 금지.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시행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해야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위탁사무를 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

-----.

1.·2. (현행과 같음)

7. (생략)

② (생략)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③ (생략)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3 - 21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개정)이유

- 일자리지원센터의 사업내용 및 홍보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대구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수행 사업 범위 정비
(안 제7조를 제7조 제1항으로 변경, 제2항 신설)
-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품 제공 조문 신설 (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일자리정책과, 전화 032)560-5803, 팩스 560-27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민 취업률 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내용 및 홍보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명확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수행 사업 범위 정비
(안 제7조를 제7조 제1항으로 변경, 제2항 신설)
- 나.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품 제공 조문 신설 (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자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구인업체 발굴
3. 채용행사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4. 취업 컨설팅 및 교육 등 구직자 역량강화 사업
5.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6.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1인당 3만원 이내의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직 상담자 및 구인 기업관련자
2. 채용행사 참여 기업관련자 및 구직자
3. 취업 컨설팅 등에 따른 강사 및 교육생

4.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5. 그 밖의 일자리분야 유관기관 담당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구인업체 발굴 3. 취업지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또는 기업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신 설></p> <p><신 설></p>	<p>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운영) ① ----- ----- 위 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② 일자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구인업체 발굴 3. 채용행사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4. 취업 컨설팅 및 교육 등 구직자 역량강화 사업 5.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6.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1인당 3만원 이</p>

내의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직 상담자 및 구인 기업관련자

2. 채용행사 참여 기업관련자 및 구
직자

3. 취업 컨설팅 등에 따른 강사 및
교육생

4.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5. 그 밖의 일자리분야 유관 기관
담당자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 - 2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 (안 제6조제1항 ~ 제3항)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게 사업비 지원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의 2)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경제정책과, 전화 560-4432, 팩스 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6조제1항~제3항)
- 나.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게 사업비 지원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도 첨부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동시설 등 고객”을 “고객”으로, “위한”을 “위한 공동 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홍보”를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4의2. 홍보사업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비 지원

가. SNS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별표1)

나.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제작 지원

4의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따른 물품 등 지원 및 지급(별표2)

가. 홍보물품 지급

나. 퀴즈이벤트

다. SNS 홍보이벤트

라. 상점가 방문이벤트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업비 지원 및 정산보고)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지원받는 상인회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SNS 서포터즈 지원 기준(제6조제1항제4호의2가목 관련)

1. 지원대상: SNS 서포터즈
2. 지원내용: SNS 서포터즈 활동비(원고료, 실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원고료: 1인당 월 20만원 이하

나. 실비: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별표 2]

물품지급 등 세부기준(제6조제1항제4호의3 관련)

구 분	시 기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당
홍보물품 지급	분기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홍보사업 추진 및 홍보물품 제공	1개당 1만원 범위
퀴즈이벤트	월 1회	매회 50만원 범위	상점가 관련 퀴즈 출제 및 정답자 추첨 (1회 50명 한정)	상점가 이용 쿠폰 또는 기프티콘(1인 1만원 범위)
SNS 홍보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상점가 이용 쿠폰 또는 기프티콘(1인 1만원 범위)
상점가 방문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 및 이벤트 참여자	상점가 이용 쿠폰 또는 기프티콘(1인 1만원 범위)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u>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u></p> <p>2. 3. (생 략)</p> <p>4. <u>상권컨설팅 및 홍보</u></p> <p><u><신 설></u></p> <p><u><신 설></u></p> <p>5. (생 략)</p> <p>② <u>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u></p>	<p>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 -----.</p> <p>1. <u>고객</u> ----- <u>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u> -----</p> <p>2. 3. (현행과 같음)</p> <p>4. ----- <u>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u></p> <p><u>4의2. 홍보사업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비 지원</u></p> <p>가. <u>SNS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 (별표1)</u></p> <p>나. <u>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제작 지원</u></p> <p><u>4의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따른 물품 등 지원 및 지급(별표2)</u></p> <p>가. <u>홍보물품 지급</u></p> <p>나. <u>퀴즈이벤트</u></p> <p>다. <u>SNS 홍보이벤트</u></p> <p>라. <u>상점가 방문이벤트</u></p> <p>5.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사업비 지원 및 정산보고)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지원받는 상인회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예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21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폐지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고,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371, 팩스 032-560-275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고,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가정보육과, 감사담당관 합의
- 라. 기 타: 별첨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2호 사목

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2호 사목(시설기준) 제8호가목 5)에 가)

5)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21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

3. 의견제출

-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0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371, 팩스 032-560-275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거 법률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설기준 적용특례 적용 대상 및 제외 범위(안 제3조~제4조)
- 다.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영업신고 관련 사항(안 제6조)
- 마.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 규정(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일반단체 등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 따라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① 제3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별표 1
2. 식품접객업: 별표 2

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시 또는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2. 영업장 배치도면 1부.

②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

③ 구청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제1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시장 및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먼지 등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1명의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등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의 위생적 제조·가공·판매를 위한 냉장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및 냉동이 필요하지 않거나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급수시설

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근에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동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제2호 관련)

1. 영업장

- 가. 영업장은 전시장 및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영업장 내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조리장

- 가. 조리장 바닥은 먼지 등 이물이 날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조리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리장 직선거리 10m이내에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조리장에는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수도관과 직접 연결하지 못할 경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2호 사목

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2호 사목(시설기준) 제8호 가목 5)에 가)

5)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2021. 12. 30., 2022. 6. 7., 2023. 7. 25.>

1. 생략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 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생략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5. 2. 3.>

1.~3. 생략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6.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2138호

석남동 529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석남동 529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람기간: 2023. 10. 16. ~ 2023. 10. 30. (14일간)
2. 공람장소: 서구청 주택과(서구 서곶로 323, 3층),
 석남동 52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서구 거북로77번길 1, 3층)
3. 공람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공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석남동 529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9번지 일원
 - (3) 구역면적: 9,167.3m²
 -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 (5) 조합원수: 173명
 - (6) 사업시행자: 석남동 52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섬걸)
 - (7) 변경내용: 조합장 선임, 조합원 권리변동 및 조합정관 변경

6. 본 조합설립변경인가 건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2141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조직개편 등으로 명칭이 바뀌는 직위표 내의 직위명 대신 관련 업무를 나타내는 직위명을 부여하고자 함.
- 위촉직 위원 중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화학 안전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개정 (안 제6조제1항)

- 나. “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을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으로 개정(안 제6조제3항제1호)
- 다. “인천서부경찰서장” 을 “인천서부경찰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으로 개정 (안 제6조제3항제2호가목)
- 라. “인천서부소방서장” 을 “인천서부소방서, 인천검단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으로 개정 (안 제6조제3항제2호나목)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환경관리과, 전화 032-560-4351, 팩스 032-560-27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관리과 환경정책팀

-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조직개편 등으로 명칭이 바뀌는 직위표 내의 직위명 대신 관련 업무를 나타내는 직위명을 부여하고자 함.
- 위촉직 위원 중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화학 안전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개정 (안 제6조제1항)
- 가. “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을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으로 개정(안 제6조제3항제1호)
- 나. “인천서부경찰서장” 을 “인천서부경찰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으로 개정 (안 제6조제3항제2호가목)
- 다. “인천서부소방서장” 을 “인천서부소방서, 인천검단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으로 개정 (안 제6조제3항제2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제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천서부경찰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나. 인천서부소방서, 인천검단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u>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u></p> <p>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p> <p>가. <u>인천서부경찰서장</u></p> <p>나. <u>인천서부소방서장</u></p> <p>다. ~ 아. (생략)</p> <p>④ · ⑤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u>구성하되</u>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u>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u></p> <p>2. ----- -----</p> <p>가. <u>인천서부경찰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u></p> <p>나. <u>인천서부소방서, 인천검단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u></p> <p>다. ~ 아.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